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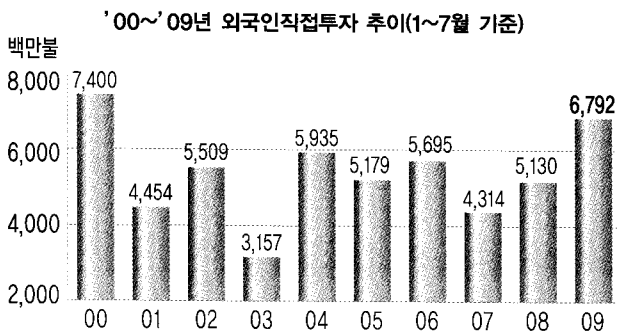
FDI실적 2000년이후 최대

'09.1~7월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00년 이후 최대치인 6,79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32.4% 급증했다.

금년 1/4분기만 해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FDI가 급감하였으나(전년 동기 대비 $\Delta 38.2\%$), 5월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월별 신고액(백만불)이 (5월) 620 \rightarrow (6월) 1,428 \rightarrow (7월) 2,148이다.

외국인직접투자 급증세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메리트,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 및 향후 성장잠재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등이 실적 반전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해외 동향을 보면,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FDI가 전년 대비 급감하는 등 전반

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Delta 29.5\%$), 일본($\Delta 63.2\%$) 등 선진국들의 FDI 침체가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 중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지로 각광 받던 중국($\Delta 20.3\%$) 및 베트남($\Delta 89.0\%$) 등도 부진한 상황이다.

해외는 경기침체로 급감

향후 전망에 있어, UNCTAD의 '2009~2011 세계투자전망조사'('09.7)에 따르면, 약 58%의 다국적 기업들이 '09년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의 악화는 당분간 지속되겠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시각 등을 고려할 때 '00년 이후 최대실적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기준: '04년, 127.9억불)이다.

IMF는 '09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Delta 3\%$ ('09.7) \rightarrow $\Delta 1.8\%$ 로 1.2%p 상향 조정('09.8)했다. OECD는 한국이 29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 보일 것으로 예측('09.8)했다.

	중국	베트남	일본	대만	프랑스	핀란드	브라질
FDI 유입액(억불)	483.7	54.0	180.2	18.1	367.1	28.3	126.5
전년 대비 증감률(%)	$\Delta 20.3$	$\Delta 89.0$	$\Delta 63.2$	$\Delta 51.3$	$\Delta 29.5$	140.4	$\Delta 24.0$

* '09.1~6월간의 실적(단, 중국·베트남은 1~7월 실적)

** 프랑스·핀란드는 순유입액(유입액-회수액) 기준 (자료: KOTRA)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로 전환

제조업·개발·규제 중심의 現 산업단지 관리체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며,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체제로 전환을 통하여 21세기에도 산업단지가 국민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125억불)의 차질 없는 달성은 물론,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하반기 투자유치 전략을 재점검하고, 외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함은 물론, 외국인투자를 국가산업발전과 연계하기 위해 중점유치 분야 선정 등 외국인투자의 질적 제고도 추진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투자증대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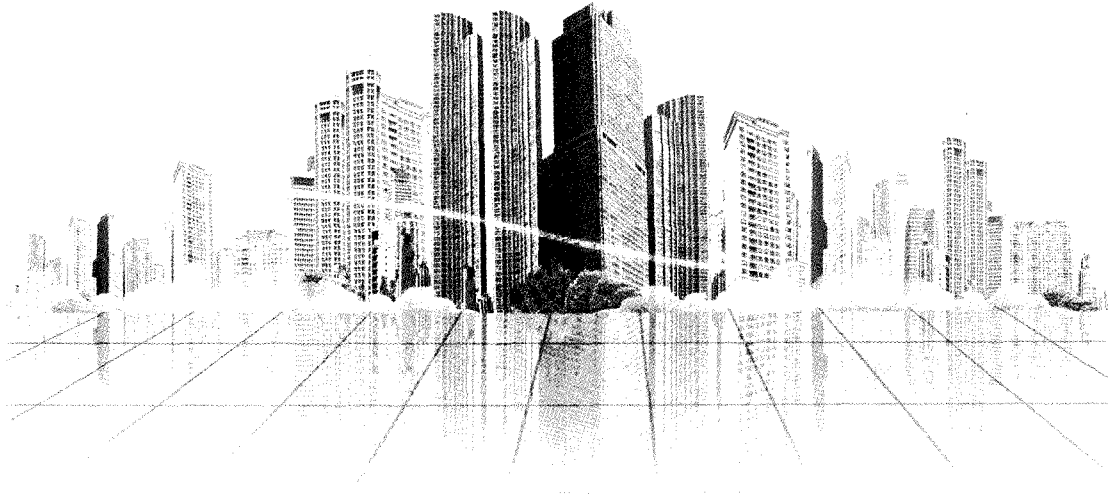
금년 7월 누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업종별로 도·소매업,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투자 증대(53.7%)가 실적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1.4%) 감소한 1,757백만불을 기록했다.

(단위:백만불, %)

구분	'08.1~7월	'09.1~7월	증감률
미국(비중)	855(16.7)	687(10.1)	△19.6
일본(비중)	699(13.6)	1,739(25.6)	148.8
EU(비중)	2,384(46.5)	3,272(48.2)	37.2
기타국가(비중)	1,192(23.2)	1,094(16.1)	△8.2
합계(비중)	5,130(100)	6,792(100)	32.4

국가별로는 일본 및 EU로부터의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8.8%, 37.2% 증가하였으나, 미국發 투자는 19.6% 감소했다. 형태별로는 M&A형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112.4%)하였으며, Greenfield형 투자의 경우 소폭 증가(2.6%)했다. 시점별로 기진출 외투기업의 국내투자 확대에 힘입어 증액 및 차관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4%, 19.0% 증가한 것이다.

한편, 산업단지 관리를 수요자 중심 모드로 바꾸기로 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



폭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산업단지 수요자 중심모드로

이번 개정안은 금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신의 공장을 주차장과 같은 지원 시설로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하고자 할 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산업입지 공급시 기업체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로 전환하게 된 추진배경에는 제조업·개발·규제 중심의 現 산업단지 관리체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며,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체제로 전환을 통하여 21세기에도 산업단지가 국민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업단지의 노후화

현황과 문제점에서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 경제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노후화되었다. 국가산업단지의 비중이 제조업 생산 37.1%, 수출 53.2%, 고용 24.7%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분포는 제조업 86.3%, S/W 개발 등 비제조업 13.7%이다. 노후 산업단지(조성후 20년 이상: 57개) 비중은 입주기업수 80%, 총생산액 79%이다.

문제점으로 수요변화에 신속적 대응이 어려운 개발·관리 절차를 들 수 있다. 입지공급에서 제조업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는 지식집약적 신산업, 서비

스업 등 새로운 산업부문의 빠른 입지수요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행정절차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실시계획(국토부)과 관리계획(지경부)을 변경해야 하는 복잡한 중복적 행정절차가 있다. 환경법령의 엄격한 적용으로 자원 재활용 위축 및 낭비 초래된다.

제도적 사항이 미비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재개발 절차이다. 구조고도화계획(산집법, 지경부)과 재정비계획(산입법, 국토부)을 각각 별도로 수립된다.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재원조달, 인센티브, 개발이익 환수절차 등 제도적 사항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관리·지원 기능 분산으로 기업애로의 체계적인 해결이 곤란하다. 산업단지 입주업종·경영지원은 산업단지공단, 기반시설 유지·정비는 시군구·한전·경찰청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관리이다. 산업입지 수요의 합리적 반영을 위한 통합적 수급조정 체제를 구축한다. 현재 산업입지공급계획(공급 중심·10년)을 산업입지수급계획(수요 반영·2년)으로 개정한다.

도심형산업단지 지식서비스 입주 허용

도심형 산업단지에 대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대폭 허용한다. 지식산업집적지구를 지정, 육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전면 허용한다. 우선, 시너지 효과가 큰 경영컨설팅·출판업 등 업종(6개)은 즉시 허용한다.

기업 수요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용도변

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미한 사항(토지면적 10% 미만 등)에 대해서는 1단계(1개월) 절차로 간소화한다. 환경업종 입주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기업 중심의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할 것이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재원조성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한다. 관리기관의 출자, 채권발행 등으로 '구조고도화 사업펀드'를 조성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발이익의 환수로 산단 전체의 이익, 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한다.

관리지원의 선진화

셋째, 산업단지 관리·지원 방식의 선진화를 들 수 있다. 기반시설 정비의 효율적 지원 위해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반시설 수요 조사·지원 계획 수립(산단공, 지자체 등)과 과제해결을 위한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지경부) 등 대책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광역경제권으로 확대·개편한다. 개별 산업단지 클러스터(12개) → 6대 광역권 클러스터(40개)로 만들 것이다. 관리기관의 기업의 설비투자 및 증설 관련 인·허가 대행한다.

기대 효과를 보면, 노후화된 제조업 산단에서 지식기반 서비스 산단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다.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노후 산단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있을 것이다. 규제·관리의 용도 변경 제한에서 사업 활성화 지원방식으로 변화한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예외적 허용에서 적극적 유치로 성장 발판을 구축한다.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고용효과 창출

분야별 개선 효과를 보면,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로 행정 기간 70% 단축, 비용 50% 절감이 될 것이다. 노후 산업의 구조고도화사업(1.5조원 투자(펀드 1조, 민간투자 5천억원))으로 4조원 생산, 2조4천억원 부가가치, 3만3천명 고용효과가 창출(KIET, '09.1)된다. 생태산업단지 확대(2개)로 폐기물 1,500만톤, CO2 62만톤이 저감될 것이다.

주요 법 개정 추진 사항을 보면, 첫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경미한 개발이란 용도별 토지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용도 변경,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2단계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입주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에 2개월, 관리계획 변경에 1개월 등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개정 산집법이 시행되면 준공된 산업단지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하게 되며, 토지 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둘째, 10년마다 작성되는「산업입지 공급계획」(국토해양부 작성)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공급계획과 연결시키는 장치가 미흡하여,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간 산업용지 수급 불균형 현상을 차단하기가 어려웠다.

개정 산집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정하고, 입주기업 보호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특수목적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한다.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 대상 사업지구, 사업기간, 입주업종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토지·물건 등에 대한 협의매수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